



## 저우후이민, 취저우 완롰 인터넷기술 유한공사, 평예, 천원성, 천용핑의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36

###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중국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 사건번호  | (2011)沪高民三知<br>终字第100号 |
| 판결 일자            | 2012. 2. 24.  | 판결 결과 | 상소 기각<br>(권리자 승)       |
| 원심원고<br>(피상소인)   | 취저우 완롰 인터넷 기술 유한공사  |       |                        |
| 원심피고<br>(상소인)    | 1. 저우후이민, 2. 평예, 3. 천원성, 4. 천위핑, 5. 천용핑<br>(원심피고 2, 3, 4는 상소하지 않음)  |       |                        |
| 참조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20조, 민법통칙 134조, 최고<br>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심리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br>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민사소송법 제130조 |       |                        |
| 영업비밀             | 인터넷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상의 50만개가 넘는 사용자 정보   |       |                        |
| 키워드<br>(Keyword) | 사용자 정보(用户的信息), 데이터베이스(数据), 고객명단(客户名单), 손해<br>배상액(赔偿数额)  |       |                        |

###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취저우 완롰 인터넷 기술 유한공사(이하 '완롰 공사')가 2001년 5월 설립되었고, 같은 해 6월 원심 피고 저우후이민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우후이민이 나머지 원심 피고들과 함께 완롰 공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완롰 공사는 중국 완왕에 [www.boxbbs.com](http://www.boxbbs.com) 도메인 등록을 하고, 'BOX 인터넷 게임 구역'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원심 피고들 다섯 명은 2004년 완롰 공사를 떠나기로 하고, 새로 [www.box2004.com](http://www.box2004.com)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들은 <Box01 업무팀 구성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위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상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편, 완롰 공사 사이트를 수정하여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사이트와 QQ 단체 채팅방에 공고를 띄워 완롰 공사 사이트에 등록된 사용자들을 원심 피고들 사이트로 이끌었다.

취재우시 공안국은 2006년 9월 저우후이민에 대해서 상업비밀침해죄로 입안하여 수사하였으나, 2008년 9월 저우후이민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완론편 공사는 원심 피고들에 대해 상업비밀침해 금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원심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심 피고 저우후이민이 불복하여 상소한 것이다.

### 03 주요 쟁점

| 원심 원고(피상소인)   | ⇔ | ⇐ | 원심 피고(상소인)                                |
|---|---|---|---|
| 본 사건 관련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는 완론편 공사의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상 50만 개가 넘는 사용자 정보는 완론편 공사의 상업비밀이다. |   |   | • 본 사건 관련 사이트는 개인 사이트이지 완론편 공사의 사이트가 아니다. |
| 원심 다섯 피고들이 완론편 공사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   |   | • 원심 피고들은 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
| 원심 다섯 피고들은 공동으로 인민폐 100만 위안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   | • 침해가 성립하더라도, 인민폐 100만 위안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다.  |

### 04 판결 요지

완론편공사가 보호를 주장하는 사건 관련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상의 사용자 정보가 피상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이 있다. 50만개가 넘는 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시간 등의 정보들은 관련자들이 보편적으로 알거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론편공사가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비밀보호 조치도 취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상의 사용자 정보는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원심 다섯 피고들이 완론편공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보들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한 행위는 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고 손실 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한다.

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5조 제2호에 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참고한다. 본 사건에서 본 사건 사이트의 유명도, 상업비밀 개발 자본, 상업비밀을 통한 수익과 미래 수익,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시간, 상소인과 네 원심피고의 권리침해 범위, 주관적 과실정도, 권리침해 행위 지속시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인민폐 100만 위안의 배상액은 적절하다.

## 05 Key Point

---

중국의 상업비밀 관련 판례에 있어서, '고객명단'이 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의 '사이트 이용자 정보'도 고객명단의 일종인데, 특히 법원은 사이트 이용자정보의 수가 50만개가 넘는 대량의 정보임에 주목하여 상업 비밀성을 긍정하였다.

---

본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에 충분치 아니하므로, 특허법의 규정을 참작하여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였다. 한국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체 취지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

다만, 한국에서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금액범위에 대한 제한 내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특허법 제65조에서는 『권리인의 손실이나 권리 침해인이 획득한 이익과 사용허가 비용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형태와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 및 경위 등의 요소에 따라 1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